

2022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3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2. 9. 2.(금),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종대(분과위원장), 박상미, 배영동, 석대권,
이순녀, 전경욱, 천혜숙(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업무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 시·도지사 추천 접수(전년도) ↓	○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
○ 관계전문가 검토(전년도) ↓	○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 ↓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매년 1월 31일까지)
○ 조사단 구성 ↓	○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관련 학회 등 추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
○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 ↓	○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대표성 등) 및 전승환경(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등 조사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 종목만 지정 시 : 지정 예고 여부 검토 -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시 : 인정 절차 진행 ※ 보유자(단체)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
○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 ↓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30일) 및 의견 수렴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 종목 지정 관보 고시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업무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매년 1월 31일까지)
○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	○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 신청서 접수
○ 조사단 구성	○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관련 학회 등 추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 보유자 인정조사(1단계) 실시	○ 서면조사(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1단계 조사 결과 검토,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
○ 보유자 인정조사(2단계) 실시	○ 현장조사(실연) 및 면담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2단계 조사 결과 검토,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
○ 보유자 인정조사(3단계) 실시	○ 심층 기량조사(실연)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3단계 조사 결과 검토,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30일) 및 의견 수렴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
○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 인정서 교부, 전승지원금 지급

목 차

【검토사항】

1	‘웃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비공개
2	‘추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비공개

검 토 사 항

1. ‘웃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2. ‘추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